

〈특별호〉

납세 태도, 공정 사회 인식 및 납세 행동

박 영 석[†]

이 지 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납세 행동의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심리사회적인 관점에서 납세 행동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납세 행동의 준거들을 납세 행동이라는 잠재 변인으로, 납세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을 납세 태도라는 잠재 변인으로, 그리고 공정 사회의 특성들을 공정 사회 인식이 라는 잠재 변인으로 상정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급여 소득자가 905명, 사업 소득자가 274명으로 총 1,179명이었으며, 온라인 패널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납세 행동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납세 행동은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그리고 탈세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 네 가지는 납세 순응 행동(자발적 납세)과 납세 저항 행동(강압적 납세, 절세, 탈세)으로 대별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정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동시에 많이 하였다. 납세 태도를 포함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면, 납세 태도는 공정 사회 인식, 납세 순응 행동 및 납세 저항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공정 사회 인식이 납세 저항 행동이나 납세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납세 저항 행동이 공정 사회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여러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건전한 납세 문화를 위한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납세 태도, 공정 사회 인식, 납세 순응 행동, 납세 저항 행동

*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8월 23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대외심포지움 "조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박영석,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

Tel: 02-2164-4277, E-mail: yspark@catholic.ac.kr

전국 17,000여 가구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통계청, 2011)에 따르면, 한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 1위가 조세(과세/납세) 부문으로 27.8%였다. 여기에서 조세란 조세제도, 세무 행정 및 납세 행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세 문화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 국민들은 조세 부문에 대하여 심각한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의 납세 행동에 대한 연구는 Becker (1968)의 범죄 경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Allingham과 Sandmo(1972)의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 모형에 근거하여, 벌금, 적발가능성 및 세율 등과 같은 “하드(hard)”한 요인들만을 주로 다뤘다(Alm, Cherry, Jones, & McKee, 2010; Kim, 2002; Spicer & Becker 1980; Wenzel, 2002).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프트(soft)”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 윤리, 사회 규범, 공정성 지각, 그리고 신뢰 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Braithwaite, Murphy, & Reinhart 2007; Hartner, Rechberger, Kirchler, & Schabmann, 2008; Murphy, 2005, 2009; Murphy & Tyler, 2008; Murphy, Tyler, & Curtis, 2009; Wenzl, 2002, van Dijke, & Verboon, 2010). 그러나, 이 두 측면이 모두 납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의 접근이다. 납세 연구에서 하드한 부분과 소프트한 부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Kirchler, Hoelzl 및 Wahl(2008), Mühlbacher와 Kirchler(2010)가 제안했던 “미끄러운 비탈길 (slippery slope)” 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납세자의 납세 순응 행동은 주로 조세처의 힘 또는 권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강압적인 면과, 조세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면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모형인데, 최근에 이 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고 있다 (Fischer & Schneider, 2009; Mühlbacher, Kirchler, & Schwarzenberger, 2011).

본 연구는 납세와 관련된 태도, 행동 및 사회적 변인들을 개관하여, 핵심적인 연구변인들로

구성된 잠재 변인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금

세금이란 매우 넓은 개념이며 분류 역시 매우 다양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기도 하고, 과세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기도 하며, 징수하는 세금의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Wenzel(2006)의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나 과세처에 따라서 납세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차별적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도 역시 모든 종류의 세금을 구분하여 다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세금이 아니라, 광의의 일반적인 “세금”을 다루고자 한다.

납세 태도

납세 태도란 납세자가 납세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태도이다. 납세 태도는 주로 납세 동기나 납세 윤리로 측정해 왔다(Togler, 2005). Wenzel (2005)이나 Kirchk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납세 윤리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납세 순응 행동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납세 태도가 납세 행동을 이끌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 태도와 납세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납세 태도와 탈세의 관계가 매우 정적인 경우(Kirchler et al., 2008)도 있었지만, 매우 약한 경우(Trivedi, Shehata, & Mestelman, 2004)도 있었으며, Halla(2011)처럼 납세 태도와 납세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의문 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 변인들 중 납세 동기 외에 돈의 의미와 평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잠재 변인으로 납세 태도를 상정하였다.

납세 동기

Braithwaite(2003)는 납세자가 자신과 조세처 사이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납세 동기가 달라지며, 그 결과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조세처와 자신의 거리를 가깝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세금 납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조세처에 대하여 헌신(commitment) 또는 조건적 수긍(capitulation)의 태도를 가진다. 헌신적인 태도를 가진 납세자들은 납세 행위를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윤리적인 규율로 여기기 때문에, 세법을 지키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조건적 수긍의 태도를 가진 납세자들은 비록 조세처가 납세자들에게 강제적인 제약과 공적인 힘을 통해서 납세 의무를 지키라고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들은 조세처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위를 수용하고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세처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Kirchler(2010)은 헌신이 자발적 납세와 정적인 관계이며, 탈세와는 부적인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irchker, Niemirowski 및 Wearing(2006)은 납세 동기가 납세 윤리와 납세 준수 사이의 매개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돈의 의미

Thozhur, Riley 및 Szivas(2006)은 개인이 돈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Tang(1992, 1995)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돈의 의미를 선(good), 악(evil), 성취(achievement), 존경(respect), 자유(freedom), 그리고 지출 비용(budget)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다시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요인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감정적 요인에는 선과 악, 인지적 요인에는 성취, 존경, 자유, 그리고 행동적 요인에는 지출 비용이 속한다.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납세 행위’

를 설명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행동적 요인인 지출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출 비용을 제외한 다른 다섯 개의 요인들은 실제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만, 지출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와 같이 ‘실질적 행위로서의 중요성’을 묻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에 대한 경제적 의미에 비중을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선택한 납세 행위로 인한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에 민감할 것이다.

Frey와 Togler(2007)는 사람들이 특히 실제 재정 상태와 바라는 재정 수준과의 괴리가 클 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럴 경우에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은 매우 큰 제약으로 여겨지게 되며, 이 괴리는 납세 정직성(tax honesty)을 감소시키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 지출 비용으로서 돈의 경제적 의미는 개인의 납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납세 태도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치의 추구

분배 정의 이론의 핵심은 평등과 효율간의 상충성에 관한 것이다. 평등은 부의 분배를 강조하고, 효율은 부의 생산을 강조한다. 사회의 평등을 위해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제공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세 정책을 통해 부를 가진 사회적 강자에게 부담시키자고 주장한다(Okun, 1975).

Rohrbaugh, McClellan 및 Quinn(1980)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노사간의 협상에서 전체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효율을 중시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분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평등을 선호하였다. Rasinski(1987)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평과 경제적 개인주의보다 경제적 평등주의에 더 가치를 부여하므로, 형평에 근거를 둔 정치적 정책보다 평등에 근거를 둔 정책이 더 공정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등 가치의 추구가 납세 태도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

인이 될 수 있다.

공정 사회 인식

Elffers, Weigel 및 Hessing(1987)은 세금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믿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세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 연구를 수행하였다. Tyler와 Blader(2000)의 집단 관여 모델(group engagement model)은 Tajfel과 Turner(1986)의 사회 정체성 이론과 Turner, Hogg, Oakes, Reicher 및 Wetherell(1987)의 자기 범주화 이론에 근거한 모델로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별이나 직업군 또는 국가와 같은 사회적 그룹에 관여시켜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추구한다는 모델이다. Tyler, Boeckmann, Smith 및 Huo(1997)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이 정의(justice)에 대한 관점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납세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자들(권영모, 1995; Plotnick, 1981)은 공정성 이론을 크게 수평적 공정성(horizontal justice)과 수직적 공정성(vertical justice)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petti와 McDaniel(1993)은 수평적 공정성이란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 즉 그룹 내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대우받는 공정성이라고 정의했으며, 수직적 공정성이란 동일하지 않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즉 차별화된 그룹 간에서 차별화되어 부과되는 세금의 패턴이 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분류는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과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성과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분배 공정성이라고 하고,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성과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절차 공정성이라 한다. 납세연구에서는 주로 분배 공정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Alm, Jackson, & McKee, 1992; Kim, 2002; Spicer et al., 1980; Wenzel, 2002), 최근에는 절차 공정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raithwaite et al., 2007; Hartner, Martina, Rechberger, Kirchler, & Schabmann, 2008; Murphy, 2005, 2009; Murphy & Tyler, 2008; Murphy, Tyler, & Curtis, 2009; Wenzel, 2002).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Bakeman & Gottman, 1997)에 따르면, 상호간 협동의 질과 상호작용은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납세자가 납세 당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에 큰 영향을 준다(Murphy, 2003, 2004a, 2004b). Moser, Evans III 및 Kim(1995)의 연구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세율보다 세율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 하였다. Leventhal(1980)은 절차 공정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6개의 일반적인 기준들-일관성, 편견의 억제, 정확성, 교정성(correctibility), 대표성 및 윤리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정성 구분의 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사회의 공정성을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가라는 경쟁 공정성, 둘째, 자신이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소득이 돌아오는지에 관한 소득 공정성, 셋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조세처의 과세액이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공정하게 느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세 공정성, 마지막으로 자신이 납세한 세금을 정부가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정 공정성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다.

경쟁 공정성

박영석과 김기연(2009)은 국내 모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장면 내에서 일어나는 공

정 경쟁 사례로부터 공정 경쟁과 관련된 행동 목록을 추출하였다. 조직 내에 구성원이 발휘하는 공정한 경쟁 행동을 수집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정 경쟁 행동이 원칙 주의, 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경쟁 회피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되는 사실을 밝혀내어 공정 경쟁 척도를 개발하였다. 공정 경쟁은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행동이며, 원칙 주의는 원칙이나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이다. 불공정 경쟁은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하는 행동이며, 경쟁 회피는 경쟁을 피하고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소득 공정성

집단의 노력으로 획득된 부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분배 정의라고 한다. Adams(1965)는 분배의 정의를 형평(equity)원칙으로 체계화하였다. 자신의 투입 대비 획득된 성과의 비율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비율과 동일한 상태를 형평이라고 정의하였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불형평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불형평은 긴장을 일으키고 불쾌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일련의 연구를 통해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본 연구는 형평 원칙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되는 공정성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득 공정성을 정의하였다. 즉 근로소득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자신이 투여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소득 공정성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에 대한 불만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소득상태와 바라는 수준과의 괴리가 클 때에 불만을 일으켜서, 정직한 납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Togler, 2006).

조세 공정성

Smith와 Stalans(1991)는 조세처의 긍정적인 행

동이 납세자의 납세 준수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조세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조세 준수 의지가 증가하는 반면, 조세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수록 납세자들은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법을 위반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세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 의식 결여와 함께 세제의 불공정성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 납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류시영, 1993). 납세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인 소득세법에 대한 태도 및 세무당국에 대한 태도가 성실납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세법 집행이 성실납세의 필수조건이다(김동은과 황호찬, 2005).

또한, 납세자가 조세에 대하여 지각하는 공정성 수준이 자신의 납세 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권영모, 1995). Vogel(1974)은 효과적인 정보와 좋은 조언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조세 절차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조세에 관한 정보와 조세 감면에 관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으며, 소득 신고 과정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세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납세 정보 혹은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여긴다면, 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조세 공정성의 절차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비교와 수평적 비교를 통해서 분배된 세액의 크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 공정성의 분배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 공정성

Vogel(1974)은 스웨덴 납세자들에게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가 징수한 세금을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그들의 납세 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어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인 납세 행동이 증가하고 납세 저항 행동이 줄어들었다. 세금을 내는 만큼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재정 공정성의 분배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집행 절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을 재정 공정성의 절차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 행동

납세 행동은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들로서,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강압적 납세와 절세는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납세 순응 행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기준에 따라, 납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며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는 자발적 납세만을 납세 순응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나머지 행동들은 납세 저항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Kirchler(2010)는 오스트리아에서 납세 행위가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로 구분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Alm et al., 1992; Friedland, Maital, & Rutenberg, 1978; Kastlunger, Kirchler, Mittone, & Pitters, 2009)과 달리 Kirchler(2010)의 연구는 구체적인 납세행동들이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자발적 납세

자발적 납세는 납세에 대한 자발적이며 순응

적 행동으로, 조세처가 부여한 의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납세에 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이다.

강압적 납세

강압적 납세란 조세기관이 부여한 납세 의무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납세를 하는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납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납세 저항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세기관의 권위나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는 않는다.

절세

절세란 부과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능동적 행동으로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납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를 하거나 세제 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절세의 근간에는 조세처의 능력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과 권위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으며, 중간 수준의 납세 저항 행동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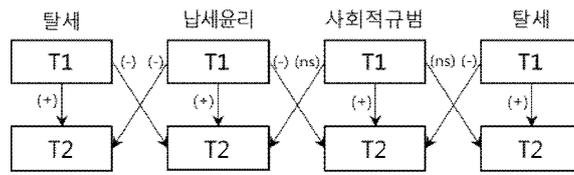
탈세

탈세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처와 자신을 ‘경찰과 도둑’의 관계로 간주하고 계임을 하듯 법을 위반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납세 저항 행동이며,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납세 모형

Wenzel(2005)은 호주 국세청의 실제 탈세자와 모범 납세자의 자료 2년 치를 사용하여 교차 지연 패널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그림 1과 같다. 탈세 t_1 은 탈세 t_2 에 (+), 납세 윤리 t_2 에 (-)영향을 주었으며, 납세 윤리(t_1)

1) t_1 은 1차 년도에 측정된 자료, t_2 는 2차 년도에 측정된 자료를 의미함. 시간 간격은 1년임.



주) (+) 유의한 정적 상관, (-) 유의한 부적 상관, (ns) 유의하지 않은 상관
 그림 1. Wenzel(2005)의 교차 지연 패널 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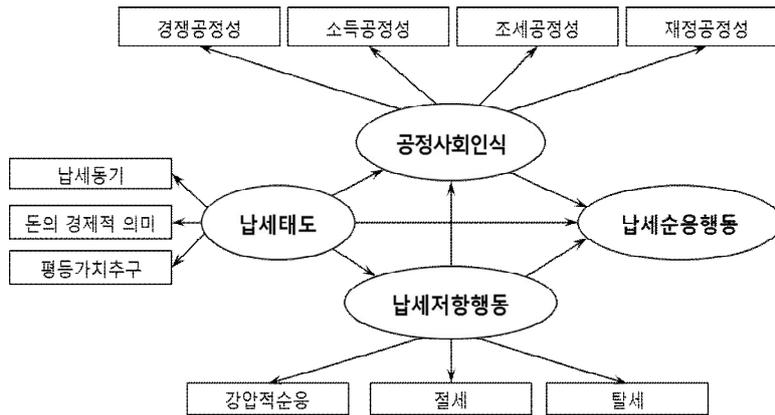


그림 2. 납세행동 연구모형

은 납세 윤리(t2)에 (+), 탈세(t2)에 (-)의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규범(t1)이 납세 윤리(t2)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규범(t1)이 탈세(t2)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탈세(t1)은 사회적 규범(t2)에, 그리고 납세 윤리(t1)은 탈세(t2)에 비록 작았지만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차 지연 설계의 내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납세 윤리와 탈세는 상호 인과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납세 윤리와 사회적 규범은 납세 윤리가 사회적 규범의 예측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과 탈세의 경우에는 비록 회귀계수가 매우 작아서 과도한 해석은 위험하지만, t1의 탈세 행위가 사회적 규범 t2의 선행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enzel(2005), 그리고 Kirchker 등(2006)의 연구에

서는 납세 윤리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납세 순응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 태도가 공정 사회 인식을 통해서 납세 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납세 저항 행동이 공정 사회 인식을 매개로 하여 납세 순응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2).

방 법

연구 참여자

온라인 조사 대행 업체를 통하여 성별과 소득 수준, 소득 종류 등을 고려한 층화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64명이었지만 응답 오류

85명을 제외하고 최종으로 1,17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685명(58.1%), 여자가 494명(41.9%)이었고, 나이는 평균 41.6세($SD = 8.6$ 세)였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 소득 1,200만원 이하가 61명(5.2%),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가 751명(63.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312명(26.5%),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가 51명(4.3%), 그리고 3억원 초과가 4명(0.3%)이었다. 소득 종류별로는 회사원이 819명(69.5%), 공무원이 86명(7.3%), 그리고 사업 소득자가 274명(23.2%)이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급여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하였는데, 회사원과 공무원을 급여 소득자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를 사업 소득자로 분류하였다.

측정도구

납세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납세 행동 척도는 Kirchler와 Wahl(2010)이 오스트리아에서 검증했던 납세 행동 척도를 한국 세법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Kirchler 등(2010)은 각 나라마다 세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항을 각 나라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따라,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그리고 탈세 행동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을 한국 세법과 상황에 맞게 번역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회전 방법은 직접 오블리민을 사용하여, 절세와 탈세 행동에서 요인 부하량이 작은 각각 한 문

표 1. 납세 행동 척도의 신뢰도

	급여소득자(α)	사업소득자(α)
자발적 납세	.892	.882
강압적 납세	.790	.818
절세	.774	.783
탈세	.794	.817

항씩을 제거하고 최종으로 총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의 납세 행동 문항별 Cronbach's α 는 표 1과 같다.

납세태도

추구 가치. 박영석(1993)과 Okun(1975)의 연구에 근거하여 평등 가치의 추구 정도를 묻는 1 문항을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였다.

돈의 의미. Tang(1992, 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돈의 의미 척도 중에서 돈의 경제적 의미를 반영하는 '지출 비용(budget)' 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사용하였다. 급여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559였고, 사업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563이었다.

납세 동기. Braithwaite(2003)의 납세 동기 문항 중에서 헌신(commitment)에 해당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급여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05였고, 사업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14였다.

공정사회 인식

경쟁 공정성. 경쟁의 분배 공정성은 박영석과 김기연(2009)의 공정 경쟁 척도 중에서 성과주의 행동 5문항과, 원칙주의 행동 5문항을 사용하였다. 급여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778이었고, 사업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782였다.

소득 공정성. 소득 공정성은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Price와 Mueller(1986)의 분배 정의 척도를 번역한 소득의 분배 공정성 3문항과 이를 응용한 문항을 추가하여 급여 소득자용 총 6문항, 사업 소득자용 총 7문항을 개발하였다. 급여 소

득자의 Cronbach's α 는 .766이었고, 사업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19였다.

조세 공정성. 권영모(1995), Gerbing(1988)의 조세 공정성의 분배 공정성 3문항과 이를 응용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급여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49였고, 사업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47이었다.

제정 공정성. Vogel(1974)의 '세금의 활용 요인'(uses of taxes factor)에서 분배에 관한 3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추가적으로 4문항을 개발하여 총 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에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6개 문항을 정하였다. 급여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83이었고, 사업 소득자의 Cronbach's α 는 .872였다.

결 과

납세 행동의 확인적 요인분석

납세 행동 문항들에 대하여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를 구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와 적합도 지수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다중 집단 비교를 통해서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모형에서 각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99%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없었다.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에서 CFI, TLI, RMSEA 모두 타당한 수준이었다. 본 지수들은 홍세희(2000)의 조언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CFI와 TLI는 .90이상일 때에 적합도가 좋다고 하며,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을 넘으면 나쁜 적합도라고 한다(Brown & Cudeck, 1993). 이 기준에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성 개념들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수렴 타당도

수렴 타당도란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며(우종필, 2012), Hair, Anderson 및 Black(1998)은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표준화 요인 적재량이 최소한 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화 요인 적재량이 모두 0.50을 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Hair 등(1998)이 제안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 분산 추출)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방법과 셋째, Fornell과 Larker(1981)가 제안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또는 합성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라고도 불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AVE는 0.5이상일 때에, 개념 신뢰도는 0.7이상일 때에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 때에,

$$AVE = \frac{\sum(\text{표준화추정치}^2)}{n} \text{이며,}$$

(단, n = 관측변수의 수),

$$\text{개념 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 + \sum \text{측정오차}} \text{ 이다.}$$

(CR)

강압적 납세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모두에서 AVE가 0.5보다 다소 작아서 수렴 타당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념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면 0.7을 넘기 때문에 수렴 타당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변별 타당도의 검증이다(배병렬, 2009). 변별 타당도란 서로 다른 잠재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첫째,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경우, 둘째, 개념들 간의 상관계

표 2. 납세 태도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i>p</i>	<i>df</i>	χ^2/df	CFI	TLI	RMSEA		
							LOW	HI	
전체	844.819	<.001	129	6.549	.942	.931	.066	.062	.071
급여소득자	605.775	<.001	129	4.696	.947	.937	.064	.059	.069
사업소득자	346.880	<.001	129	2.689	.920	.905	.079	.069	.089

표 3. 납세행동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결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i>P</i>	표준화 계수	AVE ^{c)}	개념 신뢰도	
급여 소득 자	VT ^{a)} →문항1	1.000			.785	0.633	0.893	
	VT→문항2	1.091	.036	30.157	<.001			.910
	VT→문항3	.955	.035	27.097	<.001			.828
	VT→문항4	.905	.036	25.378	<.001			.785
	VT→문항5	.804	.040	20.070	<.001			.646
	ET ^{b)} →문항6	1.000			.597	0.428	0.777	
	ET→문항7	1.024	.071	14.375	<.001			.596
	ET→문항8	1.299	.075	17.419	<.001			.796
	ET→문항9	1.115	.073	15.332	<.001			.651
	ET→문항10	1.149	.079	14.634	<.001			.610
	AVO ^{d)} →문항11	.790	.042	18.746	<.001	.604	0.500	0.800
	AVO→문항12	.969	.044	22.072	<.001	.689		
	AVO→문항13	.968	.045	21.555	<.001	.677		
	AVO→문항14	1.000			.837			
	EVA ^{e)} →문항15	1.000			.791	0.699	0.920	
	EVA→문항16	1.098	.037	29.590	<.001			.875
	EVA→문항17	1.053	.036	29.383	<.001			.870
	EVA→문항18	.918	.035	26.547	<.001			.804
사업 소득 자	VT→문항1	1.000			.694	0.633	0.893	
	VT→문항2	1.208	.087	13.856	<.001			.920
	VT→문항3	1.103	.082	13.485	<.001			.886
	VT→문항4	1.015	.084	12.101	<.001			.785
	VT→문항5	.873	.090	9.740	<.001			.625

ET→문항6	1.000				.634		
ET→문항7	.949	.112	8.480	<.001	.606		
ET→문항8	1.331	.124	10.746	<.001	.841	0.428	0.777
ET→문항9	.950	.110	8.661	<.001	.622		
ET→문항10	1.339	.135	9.938	<.001	.744		
AVO→문항11	.803	.080	10.041	<.001	.596		
AVO→문항12	.957	.073	13.109	<.001	.742	0.500	0.800
AVO→문항13	.980	.070	13.929	<.001	.779		
AVO→문항14	1.000				.814		
EVA→문항15	1.000				.748		
EVA→문항16	1.099	.082	13.462	<.001	.819	0.699	0.920
EVA→문항17	1.084	.082	13.208	<.001	.804		
EVA→문항18	.927	.075	12.379	<.001	.757		

a) VT: 자발적납세, b) ET: 강압적납세, c) AVO: 절세, d) EVA: 탈세, e) AVE: Hair 등(1998)의 공식에 따름

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즉 95% 신뢰구간에서 상관 값 $\pm 2\sigma$ 사이에 1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셋째, 이론적으로 유사한 개념들을 쌍을 이룬 뒤, 두 개념 간 상관계수를 1로 고정된 제약 모델과 자유로운 상관 값을 갖는 비 제약 모델 사이의 $\Delta\chi^2$ 값이 유의미한 경우에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판정한다. 본 연구 결과는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그룹에서 모두 세 준거를 만족하였으며, 따라서 납세 행동 네 가지는 변별 타당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납세 행동 네 가지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증명하였다. 즉, 자발적 납세와 강압적 납세, 절세, 그리고 탈세 행동이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구분되는 구성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Kirchler(2010)의 연구 결과와 차이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의 연구에서는 강압적 납세가 자발적 납세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 절세 및 탈세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납세가 자발적 납세와 부적 상관을 보이며 절세 및 탈세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오스트리아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강압적인 순응이 납세 저항 행동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rey(1999)에 따르면, “단순히 탈세를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simply predisposed not to evade)” 납세자가 있다고 하며, Alm(1999) 역시 항상 준수만 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발적 납세가 나머지 납세 행동들과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납세 행동을 가장 낮은 수준의 납세 저항 행동으로 분류하고 자발적 납세 행동을 독립적인 납세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 모형 검증

변인 간 상관계수

납세 태도와 공정 사회 인식의 관계. 납세

태도와 공정 사회 인식간의 주요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평등 가치는 재정 공정성($r=-.125, p<.01$), 경쟁 공정성($r=-.22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평등 가치와 공정 사회 인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돈의 경제적 의미는 두 그룹 모두에서 공정 사회 인식과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돈의 경제적 의미가 강할수록 경쟁 공정성($r=-.312, p<.01$), 조세 공정성($r=-.103, p<.01$) 및 재정 공정성($r=-.195, p<.01$)을 낮게 인식한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 돈의 경제적 의미가 강할수록 경쟁 공정성($r=-.360, p<.01$), 소득 공정성($r=-.198, p<.01$) 및 재정 공정성($r=-.290, p<.01$)을 낮게 인식한다.

납세 동기가 강할수록 공정 사회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납세 동기와 공정 사회 인식의 모든 하위 요소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즉, 납세 동기는 경쟁 공정성($r=.082, p<.05$), 소득 공정성

($r=.183, p<.01$), 조세 공정성($r=.444, p<.01$) 및 재정 공정성($r=.366,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경쟁 공정성과 납세동기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없지만($r=.104, n.s.$), 다른 공정성 즉 소득 공정성($r=.225, p<.01$), 조세 공정성($r=.415, p<.01$) 및 재정 공정성($r=.31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요약하면, 평등 가치를 추구하고 돈에 대한 경제적 의미가 강할수록 사회를 덜 공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납세 동기가 강할수록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다.

납세 태도와 납세 행동의 관계. 급여 소득자의 경우, 평등 가치와 자발적 납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며($r=.171, p<.01$), 강압적 납세($r=-.163, p<.01$), 절세($r=-.173, p<.01$) 및 탈세($r=-.141, p<.01$)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소득자에게서도 비슷하다. 요약하면, 평등 가치를 추구할수록 납세 순

표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	-.118**	-.021	.008	-.102**	-.026	-.065	-.016	-.024	-.109**	-.030	-.185**	-.168**
2. 나이	.015	-	.072*	.008	.209**	-.086**	.012	.095**	.071*	.220**	-.120**	-.067*	-.027
3. 평등	.029	.024	-	.243**	.088**	-.227**	.003	-.044	-.125**	.171**	-.163**	-.173**	-.141**
4. 돈의 경제적 의미	.002	.111	.253**	-	.127**	-.312**	-.037	-.103**	-.195**	.212**	-.155**	-.190**	-.249**
5. 납세동기	-.027	.172**	.154*	.123*	-	.081*	.183**	.444**	.366**	.540**	.05	.097**	.101**
6. 경쟁공정성	.172**	-.099	-.071	-.360**	.104	-	.489**	.248**	.491**	-.111**	.266**	.320**	.353**
7. 소득공정성	-.059	-.093	-.059	-.198**	.225**	.234**	-	.522**	.587**	.065	-.024	.085*	.060
8. 조세공정성	.040	-.042	.030	-.112	.415**	.355**	.257**	-	.639**	.194**	.231**	.282**	.335**
9. 재정공정성	.061	.013	-.039	-.290**	.314**	.466**	.235**	.573**	-	.114**	.365**	.414**	.452**
10. 자발적납세	-.124*	.147*	.198**	.107	.483**	-.050	.041	.202**	.137*	-	-.091**	-.019	-.108**
11. 강압적납세	.039	-.191**	-.111	-.195**	-.074	.250**	.269**	.096	.266**	-.249**	-	.636**	.630**
12. 절세	-.179**	-.037	-.147*	-.242**	.113	.330**	.454**	.257**	.487**	-.037	.603**	-	.720**
13. 탈세	-.163**	.002	-.182**	-.232**	-.001	.260**	.419**	.200**	.420**	-.224**	.591**	.730**	-

주) 대각선 위: 급여 소득자 (n=905), 대각선 아래: 사업 소득자 (n=274), 성별: 남자 = 1, 여자 = 2

* $p<.05$, ** $p<.01$, *** $p<.001$

응 행동을 많이 하고, 납세 저항 행동을 적게 한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돈의 경제적 의미는 자발적 납세($r=.212, p<.01$)와 정적 상관이 유의하고, 강압적 납세($r=-.155, p<.01$), 절세($r=-.190, p<.01$) 및 탈세($r=-.249, p<.01$)와 부적 상관이 유의하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 돈의 경제적 의미는 자발적 납세와 유의한 상관이 없고($r=.107, n.s.$), 강압적 납세($r=-.195, p<.01$), 절세($r=-.242, p<.01$) 및 탈세($r=-.232, p<.01$)와 부적 상관이 유의하다.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수록 납세 순응 행동을 많이 하고 납세 저항 행동들을 적게 한다.

납세 동기는 급여 소득자($r=.540, p<.01$)와 사업 소득자($r=.483, p<.01$) 모두 자발적 납세 행동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납세 동기가 절세 행동($r=.097, p<.01$) 및 탈세 행동($r=.101, p<.01$)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납세 동기가 높으면 납세 순응 행동을 많이 할 뿐 아니라 납세 저항 행동도 또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의 관계.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들은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 공정성과 납세 행동은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집단에서 상이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소득 공정성과 절세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지만($r=.085, p<.05$),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및 탈세 행동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 공정성은 강압적 납세($r=.269, p<.01$), 절세($r=.454, p<.01$) 및 탈세($r=.419, p<.01$)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자발적 납세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 경쟁 공정성은 급여 소득자이던 사업 소득자이던 자발적 납세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이 유의하지만, 다른 납세 행동 즉, 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공정성은 납세 저항 행동(즉, 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과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이 있지만, 납세 순응 행동(즉, 자발적 납세)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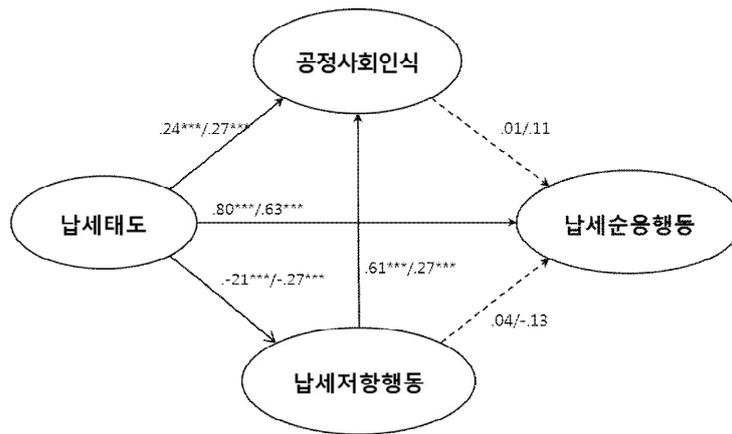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순응 행동 및 납세 저항 행동 간의 인과성이다. 납세자들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할 수 있고, 반대로 납세자들이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하다 보니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납세 모형의 구조 검증에서 다룰 것이다.

납세 모형의 구조 검증

연구 모형 검증.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를 구분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한 적합도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잠재 변인 간 경로계수를 그림 3에 묘사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각각 납세 태도가 강할수록(즉, 평등 가치를 추구하고, 돈에 경제적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며, 납세 동기가 강할수록) 사회를 더 공정하게 인식하고(급여 소득자, $r=.24, p<.001$; 사업 소득자, $r=.27, p<.001$), 납세 순응 행동도 많이 하지만(급여 소득자, $r=.80, p<.001$; 사업 소득자, $r=.63, p<.001$), 납세 저항 행동은 적게 한다(급여 소득자, $r=-.21, p<.001$; 사업 소득자, $r=-.27, p<.001$). 공정사회 인식이 납세 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으며(급여 소득자, $r=.01, n.s.$; 사업 소득자, $r=.11, n.s.$),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할수록 공정 사회 인식이 높아진다(급여 소득자, $r=.61, p<.001$; 사업 소득자, $r=.27, p<.001$). 납세 저항 행동과 납세 순응 행동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급여 소득자, $r=.04, n.s.$; 사업 소득자, $r=-.13, n.s.$).

표 5. 납세태도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i>p</i>	<i>df</i>	χ^2/df	CFI	TLI	RMSEA		
								LOW	HI	
기본 모형	급여 소득자	564.491	<.001	84	6.719	.918	.897	.080	.073	.086
	사업 소득자	277.432	<.001	84	3.303	.899	.874	.092	.080	.104
수정 모형	급여 소득자	565.825	<.001	86	6.579	.918	.900	.079	.072	.085
	사업 소득자	279.085	<.001	86	3.245	.899	.877	.091	.079	.103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의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

수정 모형 검증. 따라서, 기본 연구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즉, 납세 순응 행동과 공정 사회 인식 및 납세 저항 행동의 경로)을 제거한 간명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여 본래 기본 모형과 비교하였다(표 5). 수정 모형은 기본 모형과 내포관계이므로 $\Delta\chi^2$ 의 유의미성을 살펴봄으로써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데,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Delta\chi^2=1.334(df=2)$,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Delta\chi^2=1.653(df=2)$ 로 $\Delta\chi^2$ 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수정 모형이 더 간명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 모형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저항 행동의 인과성을 반대로 설정하여, 공정 사회 인식이 납세 저

항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모형을 검토한 결과, 사업 소득자 집단에서 납세 태도와 공정 사회 인식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r=.09, n.s.$). 따라서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저항 행동의 관계는 납세 저항 행동이 공정 사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하여 급여 소득자 집단과 사업 소득자 집단 간 경로 계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정 모형이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논 의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납세 행동이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으로 나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둘째,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납세 모형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 납세 모형에서 공정 사회 인식의 매개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개인의 납세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매우 복잡한 기제가 관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 행동이 Kirchner(2010)가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납세, 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 행동으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동일한 네 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AVE와 개념 신뢰도를 통해서 네 개의 납세 행동 요인에 대한 수렴 타당도를 증명하였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변별 타당도를 증명함으로써 구성 개념으로써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본 연구와 Kirchner(2010)의 연구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강압적 납세 행동의 특성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강압적 납세 행동이 자발적 납세와 정적 상관관계를, 절세 행동 및 탈세 행동과는 각각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압적 납세 행동이 오히려 절세 행동 및 탈세 행동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며, 서구에 비하여 조직 정체성이 높은 편이다(Hofstede, 1980, 1986). Wenzel(2002)과 van Dijke 등(2010)에 따르면,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직 정체성의 수준과 조세처에 대한 신뢰수준은 개인이 사회적 규준에 의존하는 수준과 납세 순응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강압적 납세란 조세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납세하는 행동임을 상기해보는다면, 높은 조직 정

체성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조세처의 권위에 저항하는 강압적 납세행동도 절세 및 탈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해석은, Frey (1999), 그리고 Alm(1999) 등이 언급했듯이, 자발적인 납세는 다른 납세 저항 행동들(강압적 납세, 절세 및 탈세 행동)과 질적으로 다른 독립적인 납세 행동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납세 연구들이 Allingham 등(1972)의 경제적 합리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모델은 사람들은 납세하기 싫어한다고 가정하므로, 납세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저항이 없는 납세 행동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저항의 의지가 전혀 없이 순응하는 유형의 납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 태도, 공정 사회 인식, 납세 순응 및 저항 행동으로 구성된 납세 모형을 도출하였고, 이 모형이 급여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납세 태도는 공정 사회 인식과 정적 상관이 높았으며, 납세 저항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 순응 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납세 저항 행동은 공정 사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정 사회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하거나 혹은 반대로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인과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Wenzel, 2005), 사회적인 규범(공정 사회 인식)이 탈세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탈세 행위가 사회적 규범의 인식(공정 사회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론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관성 이론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Festinger, 1957; Tannenbaum, 1955). 국가를 속이는 탈세 행위 혹은 국가의 권위에 의심을 품는 절세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사회가 바라는 모습 사이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납세 저항 행동을 줄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즉, 심리적 비용 혹은 명예의 비용을 줄이고 결국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Cullis et. al., 1997).

Wenzel(2005)에 따르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의견은 주로 외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조사(통계청, 2011)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이 세제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다. Tyler 등(1997)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세제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의 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한 납세 순응과 납세 저항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실제로 각종 세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납세 순응 행동 및 납세 저항 행동과 공정 사회 인식이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납세 순응 행동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납세 저항 행동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고, 이들은 자신이 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소득을 올린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소득금액 4,600만원 이하인 집단과 4,600만원 초과인 집단으로 나눠 각각 저 소득과 고 소득 집단으로 구분한 뒤에 각 척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공정 사회 인식의 하위척도 중에서는 조세 공정성($t=-2.073, p<.05$)과 소득 공정성($t=-5.071, p<.001$)에서 고 소득 집단이 높았으며, 납세 행동 중에서는 자발적 납세

($t=-4.552, p<.001$)와 실제 행동($t=-4.774, p<.001$)에서 고 소득 집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소득이 많을수록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많이 하며,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여길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rgler(2010)가 지적했듯이 납세 행동과 납세 태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납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쉬운 접근으로 설문 방식을 사용했지만, 자기 보고식 응답에서는 자신의 준법수준을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Andreoni et. al, 1998). 또한 Wenzel(2003)의 결과처럼 납세 행위 의도와 실제 납세 행위의 관계가 의외로 낮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Wenzel(2005)이 호주에서 시행했던 연구처럼 실제 탈세자들의 행동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정 사회 인식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즉, 납세 순응 행동의 예측 변인은 오직 납세 태도였는데, 이후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보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 및 성 역할 지향성(Kastlunger et. al., 2010), 조세처에 대한 신뢰수준(van Dijke et. al, 2010), 세계의 복잡성(Kirchler, et al., 2006; Cuccia & Cuccia, 2001), 소득의 종류와 맥락(Durham, Manly, & Ritsema, 2012), 그리고 조세처에 협조하려는 의지(Kirchler et. al, 2006)의 조절 및 매개 효과를 다룰 필요가 있다. 표 4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공정 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 간에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유의하다. 즉,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 납세 행동을 많이 하고 납세 저항 행동도 많이 한다. 그러나 구조모형의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3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면, 공정사회 인식과 자발적 납세, 즉 납세순응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사라진다. 제3의 변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정사회 인식과 납세 행동간의 관계

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세금이었다. Ariel 등(2012)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납세자들은 세금의 종류와 그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받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세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세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세금 영역을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납세 순응 행동과 납세 저항 행동을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납세 행동들 간의 관계는 보다 역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Barbuta-Misu(2011)는 납세 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실제 소득 수준, 세율(공정성 지각이 포함된), 법인 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납세 혜택, 회계 감사, 벌금과 처벌, 세금에 대한 태도,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규범, 그리고 세제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다양한 연구모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모 (1995).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6, 189-210

김동은, 황호찬 (2005). 개인성향 및 납세환경에 대한 태도가 납세윤리와 납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4(1), 27-48.

류시영 (1993).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석 (1993). 근로의욕과 가치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225- 244.

박영석, 김기연 (2009). 공정경쟁행동의 구조와 타당도. 2009년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차학술발표집.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제2판.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출판사.

윤중욱, 박현춘 (2002). 납세자의 조세의식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자료집, 116-117.

통계청 (2011). 2011년 사회조사.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d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Allingham, M. J., &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323-38.

Alm, J. (1999).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In W. B. Hildreth, & J. A. Richardson(Eds.), *Handbook on Taxation*. New York: Marcel Dekker, 741-768.

Alm, J. & Beck, W. (1991). Wiping the State Clean: Individual Response to State Tax Amnest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57, 1043-1053.

Alm, J., Cherry, T., Jones, M., & McKee, M. (2010). Taxpayer information assistance services and tax compliance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4), 577-586.

Alm, J., Jackson, B. R., & McKee, M. (1992).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 complianc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45(1), 107-114.

Alm, J., McClelland, G. H., & Schulze, W. D. (1992).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1), 21-38.

Anderson, K. E. (1985). A horizontal equity analysis of the minimum tax provisions: An empirical study. *Accounting Review*, 357-371.

- Andreoni, J., Erard, B., & Feinstein, J. (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2), 818-860.
- Bakeman, R., & Gottman, J. M. (1997). *Observing Interac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buta-Misu, N. (2011). A review of Factors for Tax Compliance. *Annals of "Dunarea de Jos" University of Galati Fascicle I: Economics and Applied Informatics*.
- Becker, G.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169-217.
- Braithwaite, V. (2003). Dancing with tax authorities: Motivational postures and non-compliant actions. In V. Braithwaite (Ed.),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pp.15-39). Aldershot: Ashgate.
- Braithwaite, V., Murphy K., & Reinhart, M. (2007). Taxation, threat, motivational postures, and responsive regulation. *Law & Policy*, 29, 138-5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uccia, A. D., & Cuccia, G. A. (2001). A closer look at the relation tax complexity and tax equity percep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 113-140.
- Cullis, J. G. & Lewis, A. (1997). Why people pay taxes: From a conventional economic model to a model of social conven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305-321.
- Durham, Y., Manly, T. S., & Ritsema, C. (2012). The Effects of Income Source, Context, and Income Level on Tax Compliance Decisions in a Dynamic 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http://dx.doi.org/10.1016/j.joep.2012.09.012>
- Elffers, H., Weigel, R. H., & Hessing, D. J. (1987).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strategies for measuring tax evasion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311-337.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ischer, J. A., & Schneider, F. (2009). The puzzle of tax compliance revisited: Testing the "slippery slope" hypothesis for trust and power against field data. Working paper. *SVGS Conference 2009* (http://www.sgvs.ch/congress09/upload/p_296.pdf).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Frey, B. S. (1999). *Economics as a Science of Human Behaviour*. Boston, MA: Kluwer.
- Frey, B. S., & Torgler, B. (2007). Tax morale and conditional cooper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5(1), 136-159.
- Friedland, N., Maital, S., & Rutenberg, A. (1978).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0(1), 107-116.
- Gerbing, M. D. (1988). *An empirical study of taxpayer perceptions of fairne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alla, M. (2011). The link between the intrinsic motivation to comply and compliance behavior: A critical appraisal of existing evidence. In F. G. Schneider(ed.), *The Handbook on the Shadow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Ltd, pp. 375-408.
- Hartner, M., Rechberger, S., Kirchler, E., & Schabmann, A. (2008). Procedural fairness and tax compliance. *Economics Analysis & Policy*, 38, 137-52.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 Park, CA: Sage.
- Hofstede, G. (1986). Cultural differences in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01-320.
- Kastlunger, B., Dressler, S. G., Kirchler, E., Mittone, L., & Voracek, M. (2010). Sex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Differentiating between demographic sex, gender-role orientation, and prenatal masculinization (2D: 4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4), 542-552.
- Kim, C. K. (2002). Does fairness matter in tax repor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3, 771-85.
- Kirchler, E., Hoelzl, E., & Wahl, I. (2008). Enforced versus voluntary tax compliance: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2), 210-225.
- Kirchler, E., Muehlbacher, S., Kastlunger, B. & Wahl, I. (2008). Why pay taxes? A review of tax compliance decisions. In J. Martinez-Vazquez, B. Torgler, & J. Alm (Eds.) *Developing Alternative Frameworks for Explaining Tax Compliance*. Abingdon, Oxon: Routledge.
- Kirchler, E., Niemirowski, A. & Wearing, A. (2006). Shared subjective views, intent to cooperate and tax compliance: Similarities between Australia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502-517.
- Kirchler, E. & Wah, I. (2010). Tax compliance inventory TAX-I: Designing an inventory for survey of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331-346.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eventhal, G. (1980). What should be done with equity theory: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fairness in social relationships. In K. Gergen, M. Greenberg, & R. Willis (Eds.), *Social exchange: Advanced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Press.
- Little, T. D., Bovaird, J. A., & Widamaan, K. F. (2006). On the merits of orthogonalizing powered and product terms: Implications for modeling interactions among latent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497-519.
- McFarlin, D. B. & Sweeney, P. D. (1992).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and organizational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3): 626-637.
- Moser, D. V., Evans III, J. H., & Kim, C. K.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Accounting Review*, 70(4), 619-634.
- Murphy, K. (2003). An examination of taxpayers’ attitudes towards the Australian tax system. Findings from a survey of tax scheme investors. *Australian Tax Forum*, 18, 209-241.
- Murphy, K. (2004a). Aggressive tax planning: Differentiating those playing the game from those who do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 307-329.
- Murphy, K. (2004b). The role of trust in nurturing compliance. A study of accused tax avoiders. *Law and Human Behavior*, 28, 187-209.
- Murphy, K. (2005). Regulating more eff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ax non-complian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2, 562-89.
- Murphy, K. (2009). Procedural Justice and Affect Intensity: Understanding Reactions to Regulatory Authorities. *Social Justice Research*, 22, 1-30.
- Murphy, K. & Tyler. T. (2008). Procedural Justice and Compliance Behaviour: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652-68.
- Murphy, K, Tyler, T. & Curtis, A. (2009).

- Nurturing Regulatory Compliance: Is Procedural Justice Effective when People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Law. *Regulation and Governance*, 3, 1-26.
- Mühlbacher, S., & Kirchler, E. (2010). Tax compliance by trust and power of authoritie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4(4), 607-610.
- Mühlbacher, S., Kirchler, E., & Schwarzenberger, H. (2011). Voluntary vs. enforced tax compliance: Empirical evidence for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European Journal of Law & Economics*, 32(1), 89-97.
- Okun, A.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The Brookings Institution.
- Osgood, C. E., & Tannenbaum, P. H. (1955).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review*, 62(1), 42-55.
- Plotnick, R. (1981).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63, 283-88.
- Price, J. L. & Mueller, C. W. (1986). Distributive justice. J. L. Price & C. W. Mueller (Eds.). In *Handbook of Organizational Measurement*. Pitman: Marshfield, MA.
- Rasinski, K. A. (1987). What’s fair is fair-or is it? Value differences underlying public views about social justic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3, 201-211.
- Repetti, J. R., & McDaniel, P. R. (1993).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The Musgrave/Kaplow exchange. *Florida Tax Review*, 1(10), 607-622.
- Rohrbaugh, J., McClellan, G., & Quinn, R. (1980). Measu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utilitarian and egalitarian values: A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about fair distribu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34-49.
- Smith, K. & Stalans, L. (1991) Encouraging Tax Compliance with Positive Incentives: A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Direction. *Law and Policy*, 13(1), 35-53.
- Spicer, M. W., & Becker, L. A.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 171-75.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u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ang, T. L. P. (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97-202.
- Tang, T. L. P. (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9, 809-817.
- Thozhur, S. M., Riley, M., & Szivas, E. (2006). Money attitudes and pay satisfaction of the low paid.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2), 163-172.
- Torgler, B. (2003). *Tax morale: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of tax complia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asel.
- Torgler, B. (2003). To evade taxes or not to evade: that is the question. *Journal of Socio-Economics*, 32, 283-302.
- Torgler, B. (2005). Tax morale and direct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2), 521-531.
- Trivedi, V. U., Shehata, M., & Mestelman, S. (2004). Attitudes, incentives, and tax compliance. Unpublished manuscript, Hamilton: McMaster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Turner, J. C., Hogg, M., Oakes, P., Reicher, S.,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England: Blackwell.
- Tyler, T. R. & S. L. Blader (2000). *Cooperation in groups: Procedural justice, social identity and behavioral engagement*. Philadelphia: Psychology

- Press.
- Tyler, T. R., Boeckmann, R. J., Smith, H. J., & Huo, Y. J. (1997). *Social justice in a diverse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 van Dijke, M., & Verboon, P. (2010). Trust in authorities as a boundary condition to procedural fairness effects o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1), 80-91.
- Verboon, P. & van Dijke, M. (2007). A self-interest analysis of justice and tax compliance: How distributive justice moderates the effect of outcome favorabilit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8, 704-727.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27(4), 499-513.
- Wenzel, M. (2002). The impact of outcome orientation and justice concerns on tax compliance: The role of taxpayers' ident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629-45.
- Wenzel, M. (2003). Tax compliance and the psychology of justice: Mapping the field. In V. Braithwaite (Ed.),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 Wenzel, M. (2005). Motivation or rationalization - Causal relations between ethics, norms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4), 491-508.
- 1 차원고접수 : 2013.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3. 07. 15.
최종게재결정 : 2013. 08. 14.

〈Special Section〉

Tax Attitude, Fair Society Perception, and Tax Behavior

Young Seok Park

Chi Ho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tax payment behavior in the psycho-social perspective, getting out of traditional economic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the tax payment behavior. We tried to design a model and verify it assuming various criteria for tax payment behavior as the latent variable of tax payment behavior, individual psycho-social variables as the latent variable of tax payment attitudes which can predict the tax payment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fair society as the latent variable of fair society perception. Participants were total 1,179 people including 905 people of salary earners and 274 people of business income earners. Data was collected by online panel survey. As the result of the construct validity verification of the tax payment behavior, it was shown that the tax payment behavior is consisted of 4 types of behavior-voluntary tax compliance, enforced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Further they were classified into tax compliance behaviour(voluntary tax payment) and tax resistance behavior(enforced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tax evasion).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ax payment attitudes, fair society perception, and 4 types of tax payment behaviors were observed. In the model verification, tax payment attitude had a meaningful impact on tax compliance behaviour and tax resistance behavior, but fair society perception didn't affect both behaviors. Preferably, tax resistance behavior had a meaningful impact on fair society percep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a healthy tax culture,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Tax Payment Attitude, Fair Society Perception, Tax compliance Behavior, Tax Resistance Behavior, voluntary tax compliance, enforced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and tax evasion

부록 : 설문 문항

납세동기(헌신)

1.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2. 선의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한다
3. 세금납부에 대해서 윤리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돈의 의미(지출비용)

1. 돈은 예산에 맞춰서 관리해야 한다
2. 돈은 매우 신중하게 지출해야 한다

추구가치(평등)

1. 권리, 의무,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경쟁공정성

1. 일의 결과보다 주위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쓴다 (R)
2.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정경쟁 원칙을 지킨다
3.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4.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정보나 기밀사항의 보안을 지킨다
5.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한다 (R)
6.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무처리 매뉴얼을 준수한다
7.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보나 타협이 효과적일지라도 승부에 집착한다 (R)
9.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칙이나 제도보다 인맥이나 학맥에 의존한다 (R)
10.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R)

소득공정성(급여소득자)

1.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해 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
2. 내가 받은 교육과 직업 훈련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적절하게 보상받고 있다
3. 우리 회사의 업적결과 통보절차는 적절하지 못하다 (R)
4. 내가 맡은 책임을 고려해 볼 때 나는 적절하게 보상받고 있다
5. 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R)
6. 우리 회사의 인사 고과(업적 평가)절차는 적절하지 못하다 (R)

소득공정성(사업소득자)

1. 내 경력에 비추어볼 때 나의 소득은 적절하다
2. 우리나라에서 기업 간 경쟁은 공정하다
3.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나의 소득은 적절하다
4. 내가 받은 교육과 직업훈련에 비해 나의 소득은 적절하다
5. 내가 맡은 책임에 비해 나의 소득은 적절하다
6. 우리나라의 시장 정책은 대기업에 유리하다 (R)

7.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는 공정하다

조세공정성

1. 세금을 내는 절차가 간단하고 명료하다
2.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쉽다
3. 내가 내는 세금은 나의 소득수준과 비교해서 적절하다
4. 내가 내는 세금은 나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절하다
5. 결정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용이하다
6. 내가 내는 세금은 소득 수준이 나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절하다

재정공정성

1. 세금을 내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다
3.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4.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다
6. 결정된 예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용이하다

자발적납세

1. 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2. 나는 납세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3. 나는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
4. 내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강압적납세

6. 나는 국세청이 종종 시행하는 세무조사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
7. 나는 탈세에 따른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
8. 나는 조사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세금을 납부한다
9. 나는 세무조사를 확신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
10. 나는 걸리지 않으면서 탈세하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다

절세

11. 나는 세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업이나 조언을 받고 있다
12. 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교육이나 훈련에 비용을 지출한다
13. 나는 부양가족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신고했다
14. 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입하기도 한다
- #. 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세금에 관한 법규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탈세

15. 나는 일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빙서류 없이 처리하자고 한 적이 있다

16. 어떤 물품을 싸게 구입한 뒤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면서 세무당국에 그 이윤을 신고하지 않았다
 17. 나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인 적이 있다
 18. 나는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원래 사용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적이 있다
- #.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해 본 적이 있거나, 현금으로 구입할 것이니 할인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자료처리에서 제외한 문항

* R : 역문항.